

# 복지권 개념정립

-인권 및 시민권적 관점-

안 치 민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1. 머리말

복지의 수준 또는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복지 수급이 사회성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의 제공은 국가나 사회의 의무라는 인식은 아직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이는 법적인 자유권 또는 공민권(civil rights)이나 정치권(potitical rights)만을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 또는 시민권의 범주로 간주해 온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며, 또한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역사에서 복지권이 뒤늦게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조항에 행복추구권, 사회보장권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조항으로서 실제적인 권리로 행사되지는 못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형식성을 띠고는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서 국가가 베풀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의 권리라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sup>1)</sup>

한편 복지권이란 용어 자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복지권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교육, 주거, 문화,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권이 복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바,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협의로는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만을 의미하기도 했고, 광의로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일반을 포함하기도 한 혼란의 부분적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복지권의 실제적인 구성 내용, 성격 등을 밝힘으로써 복지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는 이론적인 기여는 물론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사회복지 연구자 및 종사자들의 영역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권 개념은 인간의 욕구와 권리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복지는 욕구의 충족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간의 권리라는 면에서 욕구는 권

---

1) 예전대 2000년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쓰던 보호, 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권리를 의미하는 급여, 수급권자로 바꾸었으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노동능력자를 포함시키고 인구학적 연령기준 등도 없앴다.

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권 개념은 보편적인 인권, 시민권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복지권 또는 사회권은 공민권 및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이며, 전자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호의존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권리 없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나 권리는 명목상의 의미만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첫째, 욕구 및 권리의 개념과 그 유형을 통해 복지권의 논리적 근거를 밝히고 둘째,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인권 및 시민권의 내용과 복지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셋째, 인권 및 시민권과 복지권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복지권 개념과 복지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지, 또 복지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2. 욕구 및 권리와 복지권

### 1) 욕구와 권리

주지하듯이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의 상태”이다. 『사회사업사전』(Social Work Dictionary)은 복지를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정, 경제적 보장의 상태. 또한 시민들이 그러한 상태를 이루하는 것을 돋는 사회의 노력”으로, 사회복지를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Barker, R. L., 1987). 여기서 노력이나 프로그램, 급여 등은 국가, 사회 등 복지공급 측면에 관련된 정의라면, 상태는 복지대상자에 관련된 복지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다. 어떤 정의를 따르던 여기서 복지가 의미하는 바는 욕구(need)의 충족이라는 점이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의 상태는 비복지의 의미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와 같이 복지는 욕구의 충족으로 정의되는데, 인간의 욕구는 그 유형과 정도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복지학에서 복지 개념과 욕구를 연결시킬 때 흔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매슬로우(Maslow, A. H. 1970)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physiological) 욕구, 안전(safety)의 욕구, 소속감(belonging)의 욕구, 자존(self-esteem)의 욕구,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는 주로 물질적, 육체적인 욕구이며, 나머지 세 욕구는 주로 심리적, 정신적인 욕구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매슬로우의 욕구 분류는 물질적 측면의 복지는 물론 심리적, 정신적 측면의 복지,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

2) 여기서 욕구(need)는 욕망(desire)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욕구는 필요의 개념을 요구하는 절대적 결핍에서 추론되며, 욕망과는 달리 대치불가능성과 결정적 원인이라는 논리적 속성을 갖는다(김정래, 1998: 32).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의 결핍은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반면, 필요로 하는 욕구의 결핍은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다.

한편 역시 복지 영역에서 중요점을 시사하고 있는 욕구 분류로서, 브래드쇼(Bradshaw, J., 1972)는 인간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사회와의 관련하에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인식의 기준에 따라 규범적(normative) 욕구, 느껴진(felt) 욕구, 표출된(expressed) 욕구, 비교(comparative) 욕구로 구분하고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분류가 충족되어야 할 욕구의 종류 또는 유형을 말한다면,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는 욕구 충족의 차원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규범적 욕구와 표출된 욕구는 복지를 제공할 때 현실적인 수준에서 복지공급 측과 복지대상 측이 부딪치는 국면이며, 느껴진 욕구 및 비교 욕구는 복지대상 측에서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표출로 전환될 수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사회관계를 고려한 욕구 분류는 실제적인 복지의 수준과 규범적인 복지권이 의미하는 권리의 정도를 분석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욕구와 권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며 동일시된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지위와 그것에 수반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요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욕구에 대해 얘기할 때,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기회와 조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욕구에 대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바로 권리에 대한 진술이 되며, 복지권의 한 중요한 의미는 욕구의 이면에 깔린 권리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Ife, J., 2001: 139-140). 매슬로우는 그의 책『동기와 인성』(*Motivation and Personality*) 제2판 서문에서 “본능적인 기본적 욕구와 유사 욕구들을 욕구로서 뿐만 아니라 권리로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고 의미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일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이러한 욕구와 유사 욕구의 만족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자연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1970: XⅢ, Ife, J., 2001: 145에서 재인용)라고 언급하며, 욕구가 사실상 권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권리는 두 가지 측면의 욕구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김정래, 1998: 27-41). 하나는 물리적 신체적 생존의 욕구인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신체적 삶은 유지되기 어렵거나 황폐화된다. 다른 하나는 보편적 욕구로서 신체적 생존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의 질이 결정적으로 훼손된다. 예컨대 물리적 생존에 필요한 영양이 결핍되면 신체적 생존이 불가능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삶의 질이 훼손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관련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나 권력에 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2) 권리유형과 복지권

복지 개념은 인간 욕구의 충족을 통해 정의되며,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일종의 권리로 간주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복지의 수급은 인간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복지권이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욕구를 복지의 권리로 보는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욕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매슬로우식 접근이나 인간의 욕구를 사회관계 맥락에서 분류하고 있는 브래드쇼의 관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겠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극적(negative) 권리와 적극적(positive) 권리로 구분되는데, 소극적 권리란 외부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적극적 권리는 국가 개입을 보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호펠드(Hohfeld, W., 1978)는 자유권(Liberties), 청구권(Claims), 면책권(Immunities), 권력(Powers) 등 네 가지 종류의 권리를 식별하고 있는데, 이 중 자유권과 면책권은 소극적(negative) 권리이며 청구권과 권력은 무엇에 대한 수급자격의 기초되는 적극적(positive) 권리이다. 우선 자유권은 일방적인 보호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이다. 자유권이란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는 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거나 하지 않을 각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반면 청구권은 자유권에 대비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로 관련된 의무를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이다. 자유권과는 달리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한편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자산을 협력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면책권은 권력에 대비되는 것으로 권력이나 청구권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즉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다.

복지권은 다른 사람들의 의무를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로서 적극적 권리이며 청구권이다. 한편 면책권의 일부, 예컨대 차별에 대한 적극행동(affirmative action), 재향군인보상 등 과거의 권리박탈에 대한 보상은 복지와 관련되지만 소극적 권리로서 복지에 대한 권리로 볼 수는 없겠다.

일반적으로 단순화하면 소극적 권리(freedom from)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으로서 자유주의자 또는 정치적 우파에 의해 옹호되며, 적극적 권리(Entitlement to)는 정치적 평등과 복지국가의 기반으로서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정치적 좌파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적극적 권리에 의해 창출되는 수급권에는 그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특히 복지권은 어떤 시민권의 의무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유주의 내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자유주의 우파가 적극적 복지권을 더욱 지지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유주의 좌파에서는 적극적 복지권의 의무적, 조건적 성격을 불신하여 복지국가에 반하는 소극적 권리를 강조한다(Dean, H., 1996: 13).

한편 권리는 수동적(passive) 권리와 능동적(active) 권리로도 구분되는데, 이는 벤딕스(R. Bendix, 1964: 78-79)가 공민권을 '존재(being)라는 법적 상태'로 그리고 정치권을 '수행(doing)하는 법적 권리'으로 언급한데서 유래한다. 존재는 자유권과 청구권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고 수동적 지위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행은 권력으로 설명되는 능동적 과정에 따라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초권리(meta-right)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Janoski, T., 1998: 29). 수동적 권리는 지위에 의해 권리를 갖는 반면 능동적 권리는 수용능력에 의해 권리를 창출한다. 복지권은 권리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지위에 결부되어 수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동적 권리로 볼 수 있겠다.

### 3. 인권 논의와 복지권

#### 1) 인권 개념

인권 개념의 어원은 보편적인 권리 개념이이며, 보편적인 권리 개념은 그 관념형성의 뿌리를 고대의 자연법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17세기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권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권이란 용어 자체도 페인(T. Paine)<sup>3)</sup> 그의 저서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에서 사용한 바로 그 저서 제목과 동의어인 '인간의 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또한 보편적인 권리 개념은 각 주권국가의 도덕규범이나 정치적·사회적 제도 및 법질서에 구속력을 두는데 반해 인권은 주권국가의 범위를 넘어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자연법전통의 근대적 변형으로서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서 서구 자유주의사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서구 자유주의 전통은 보다 구체적으로 17세기 서유럽, 특히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인권 개념의 원형은 로크(J. Locke)의 저서 『시민정부론』에 나오는 자연권 개념이다. 로크의 자연권 개념은 자연법과 마찬가지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인간 본연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도 확연한 언급은 루소(J. J. Rousseau)에서 볼 수 있다.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 제1권 4절 "노예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언급하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ousseau, J. J., 1995: 189; 이봉철, 2001: 134). 인간은 자연적 권리(自然的權利)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의해 정치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인간의 권리를 내부 및 외부의 침해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自然法的權利)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공통의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사상을 바탕으로 한 근대 시민헌법적 인권보장제도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당시의 인권 내용은 주로 자유권과 정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인권 논의의 내용에 복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 결의에 따라 채택되고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및 후속의 두 조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다.<sup>4)</sup>

3) 페인이 사용한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는 프랑스인권선언 원문에 나타난 자연권(droit naturel)에 대한 번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권 개념은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었다고 여겨지는 절대권으로서 전통적인 자연권 개념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이봉철, 2001: 105).

4) 물론 총체적인 인간에 대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부분적인 빈곤자와 노동자의 사회보험 등의 권리 인정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Perrin, Guy, 나병균 역, 1999).

## 2) 세계인권선언과 복지권

세계인권선언 및 이에 바탕을 둔 두 조약에 의하면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로 구분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지적 영향을 받아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주로 발달한 시민적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실현의 차원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 또는 방어의 차원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좁게 보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로 간주된다. 또한 이 권리는 자연권의 일부로 간주되며, 전통적 방식은 법률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Ife, J., 2001: 5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념 등 집합적인 사회운동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로 간주된다.

우선 소극적 권리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기존의 국가와 권위, 독재, 권력의 자의성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 박탈 등에 대항해서 피치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요구였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는 보다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 정치권, 즉 공직 참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수동적인 자유권과는 달리 권리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다음으로 적극적 권리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점차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권리, 즉 개인의 행복과 복지 및 복지를 충족시켜 줄 수단을 국가가 제공하고 보장하라는 청구권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사회보장권 혹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복지권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위 또는 자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권리를 창출하는 능동적 성격보다는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인권선언 및 조약에 나타나는 권리의 유형과 그 구성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1)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2) 시민적 자유권 3) 법 집행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 4) 정치적 권리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에는 생명권, 고문 · 인체 실험의 금지, 노예 · 예속 · 강제노동의 금지, 신체의 자유, 수감자 처우, 민사구금의 금지 등이 포함되고, 시민적 자유권에는 이동 · 거주 · 출입국의 자유, 사생활 · 명예 · 평판의 존중,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아동의 권리 등이 포함되며, 법 집행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에는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처벌의 금지, 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등이,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는 공무 참여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1) 경제적 권리 2)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제적 권리에는 노동의 권리(노동조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의 권리 포함)를 의미하며, 사회적 권리는 사회보장권, 가정의 보호와 원조(부녀자, 아동 포함), 생활수준 유지(식량, 의복 및 주택 포함), 건강권, 교육권을 포함하고,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 참여권(과학의 혜택, 창조물에 의한 유형무형의 이익 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의 권리 요소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곧 복지권을 의미한다. 매우 협소한

복지권의 의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중에서도 사회적 권리만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발전의 혜택 등을 공유하는 문화생활 참여는 엄연하게 공동체 성원의 복지이다. 그리고 노동의 권리 중 노동조건은 당연한 복지권이며,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의 권리는 자유권인 동시에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권리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의 인권 논의에서 처음부터 복지권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인권의 내용에 대해 분류체계 따른 입장은 결국 자유권이 인권내용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구성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과 자유권은 인권내용 구성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일 수는 없으며 여기에 복지권이 참가되어야 인권 내용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이봉철, 2001: 60). 그러나 앞서 욕구의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인 만큼 인간의 삶 모든 영역이 인권의 대상이며, 인간의 삶이 특정 사회 및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권은 그 실현을 위해서 특정 사회와 사회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복지권의 내용이 포함되고 또 그 이후 복지권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과정은 복지국가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국한하는 협소한 인권 해석은, 비록 인권에 대한 제한적 책임으로서 순수한 시장자유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국가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주의나 자유방임경제와는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인권 정의에 포함된다면, 자유시장에서는 포괄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없는 강력한 공공 급여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Ife, J., 2001: 241).

#### 4. 시민권 논의와 복지권

##### 1) 시민권 개념과 마샬의 시민권이론

인권은 우리가 특정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 반면 시민권은 국가 또는 공동체 단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시민권을 확대하면, 전지구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서 보편적 인권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시민권 개념 또한 인권 개념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권리 개념에서 그 기원을 찾으며, 그 기원이 각 주권국가에 구속력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권 개념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홉스(T. Hobbes), 로크, 루소로 대표되는 자연권사상 혹은 사회계약사상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명제로 집약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권리는 엄밀히说是 시민의 권리이다. 시민이라는 용어의 뜻은 서양의 역사에서 볼 때,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유팔무, 2002: 243). 첫째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에 살아간 특권적 자유인들이라는 뜻이었고, 둘째는 중세 후기 도시에 거주하던 상공업자로 대표되는 평민 신분층이었으며, 셋째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으로서 기본권과 주권을 소지한 보통사람이었다. 고대의 시민의 개념과 원리는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s)에서 발전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시민권은 도시국가 지배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설명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상이한 정치공동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시민권이 존재한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민권은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 갖는 권리로서 공동체 성원임 또는 공동체 참여로 설명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라 할 지라도 현재의 시민의 의미와는 다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했을 때, 이는 형식상 모든 종류와 지위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특정 시민에 국한될 뿐 여성, 아동, 농노, 노동자, 빈민 등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sup>5)</sup> 또한 시민 또는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그 의미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로크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하는 사회를 시민사회라 정의하고, 이를 정부와 구별하였다. 시민사회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로서, 시민의식과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의 상호작용, 결사, 권리추구활동, 그리고 거기에 기초하는 제도이며, 국가권력의 정치적·윤리적 지배정당성이 창출되는 갈등적 여론형성과 소비생활의 영역이다(김경동, 2002: 39).

현대 민주국가에서 시민권의 기반은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현대 국민국가에서 시민권 참여는 보편적 참정권에 기반하는 정치공동체의 법적 성원임과 그에 따른 법의 지배에 근거한 시민공동체의 성원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 시민권은 사회로 확대되어, 사회구조에 걸쳐 현대 시민권의 일반화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따라서 누구도 또는 어떤 집단도 법적으로 특권이 없음을 의미한다(Barbalet, J. M., 1988: 2).

시민권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이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마샬이다. 그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샬은 시공을 초월하는 시민권의 보편적 원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시민권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본다(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1999: 49).

마샬은 지난 3세기 동안 출현한 시민권의 3가지 양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각 새로운 형태는 앞선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Marshall, T. H. and T. Bottomore, 1992). 첫 번째 형태는 18세기에 출현한 공민권(civil rights)으로서 자산, 개인적 소유와 정의에 대한 권리 등 개인 자유(freedom)에 필요한 권리 확립이다. 두 번째 형태는 주로 19세기에 확립된 정치권(potitical rights)으로서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괄한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사회권(social rights)으로서 주로 20세기 이후 건설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 보장(security) 측면의 시민권리를 강조한다.

우선 공민권은 개인적 자유에 필요한 권리로 구성되며, 그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는 법률제도와 사법체계이다. 여기에는 재산권, 계약권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 및 종교적 실천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 집행에 관한 권리,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5) 영국의 경우 1815년 무렵까지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성인남자의 5% 정도에 불과했다. 1884년에 야 노동자를 포함 전 남성에게 확대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1918년에 이르러 30세 이상에 한하여 부여되었다(차하순, 1982). 미국의 경우 선거권은 18세기 말까지 남성과 자유인,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였거나 일정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었으며, 1920년에 와서야 여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유팔무, 2002: 244).

마샬은 공민권은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집단의 결사, 연합, 모든 종류의 운동 등을 창출하는데 사용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마샬은 공민권을 일종의 권력이라고 본다.<sup>6)</sup> 다음으로 정치권은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그러한 권리는 의회제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은 시민권의 사회적 요소로서 “적정수준(modicum)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의 권리”(Marshall, T.H. and T. Bottomore, 1992: 8)를 의미한다. 마샬은 사회권과 가장 밀접한 제도는 교육제도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sup>7)</sup>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헬드(D. Held)는 마샬의 시민권 관점이 국가-시장의 근본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위의 공통구조를 기반으로 7가지 권리의 기반과 7가지의 관련된 권리의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Held, H., 1994:51-54). 헬드의 권리의 기반은 신체, 복지, 경제, 조직화된 폭력과 강제관계, 문화, 시민적 결사, 조절제도와 법적 제도이며, 각각의 권리ς는 건강권, 사회적 권리(복지권), 경제적 권리, 평화권, 문화권(사상과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정치적 권리이다. 여기에서 헬드는 복지에 기반하는 사회적 권리에 사회보장, 아동보호 및 교육급여에 대한 권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헬드의 7가지 권리 중 사회적 권리만을 복지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복지권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게 된다. 헬드의 7가지 권리를 마샬의 3가지 권리에 결부시키면, 건강권, 사회적 권리(복지권), 경제적 권리ς는 사회권에, 평화권, 문화권(사상과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공민권에, 정치적 권리는 그대로 정치적 권리에 해당한다(<표 1>을 참조할 것). 따라서 복지권에 사회적 권리 외에 건강권과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sup>8)</sup>

6) 반면 공민권과 대조적으로 사회권은 전혀 권력의 행사를 위해 설계되지 않는다(Barbalet, J.M., 1988: 19).

7)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미국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동의어로 소득보장, 주택보장, 교육보장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손준규, 1992: 34).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반을 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샬이 이 용어에 대한 주에서 ‘사회권으로부터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특히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듯하다.

8) 다렌돌프(1969)는 사회권에 사회보장은 물론 의료보장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김형식, 1995: 86).

〈표 1〉 시민권, 권리, 인권 범주

마샬의 시민권 범주	헬드의 권리의 기반과 권리 범주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범주
	경제 : 경제적 (최소소득과 노동에 대한 권리)	경제적 (노동의 권리, 노동조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의 권리 포함)
사회적	복지 : 사회적 (사회보장, 아동보호 및 교육급여에 대한 권리) 신체 : 건강권 (육체적·정서적 안녕에 대한 권리, 출산력에 대한 통제 포함)	사회적 (사회보장권, 가정의 보호와 원조-부녀자, 아 동 포함-, 생활수준 유지-식량, 의복 및 주택 포함-,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문화생활 참여권, 과학의 혜택, 창조물에 대 한 이의 혜택 포함)
시민적(공민적)	조직화된 폭력과 강제관계 : 평화 적(법 절차, 육체적 안전, 평화적 공 존의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생명권, 고문·인체실험의 금지, 노예·예 속·강제노동의 금지, 신체의 자유, 수감자 처우, 민사구금의 금지)
	문화 : 문화적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법 집행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공 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처벌의 금지, 법 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법 앞 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시민연합 : 시민적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시민적 자유권 (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사생활·명 예·평판의 존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단결 권, 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어린이의 권 리)
정치적	조절제도와 법적 제도	정치적 (공무 참여)

출처 : Dean, H.(1996: 228)에서 재구성

## 2) 시민권의 확장과 복지권

마샬 이후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 논의는 벤딕스, 터너(B. S. Turner), 다렌돌프(R. Dahrendorf) 등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시민권 도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집합적 교섭, 노동자협의, 노동자의 경영참여, 노동쟁의 그리고 관료제나 조직체를 통제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에 직면해 곤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마샬은 그것들을 부차적인 범주로 분

류하여 '산업적 시민권의 2차적 체계'라고 불렀다. 이 병렬적인 보충적 복지체계에 대해 기든스는 산업적 시민권은 단순히 공민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적 공민권'(economic civil rights)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샬은 산업적 시민권을 시민권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재노스키(T. Janoski)는 마샬, 벤딕스, 터너 등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시민권 도식을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권리를 함께 일괄했다고 주장한다(1998: 29).

이에 따라 재노스키는 행위와 제도의 이분법에 의한 시민권 도식을 통해 시민권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외에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우선 행위에 따른 권리의 유형을 수동적(passive) 권리와 능동적(active) 권리로 구분하는데, 이는 벤딕스(Bendix, R., 1964: 78-79)가 공민권을 '존재(being)라는 법적 상태'로 그리고 정치권을 '수행(doing)하는 법적 권리'으로 언급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제도에 따라 시민사회를 공공영역(정치국가)과 민간영역(시장)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시민권의 구성요소는 공공영역의 수동적 권리인 법적 권리(공민권), 민간영역의 수동적 권리인 사회권, 공공영역의 능동적 권리인 정치권, 그리고 민간영역의 능동적 권리인 참여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참여권은 민간영역의 능동적 권리이다. 공민권, 사회권과 같은 수동적 권리는 지위에 의해 권리를 갖는 반면 능동적 권리는 수용능력에 의해 권리를 창출한다. 또한 호젤드의 권리범주와 관련 시킬 때 참여권은 권리이면서 개인적인 정치권과는 다른 집합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마샬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권 논의에서 시민권의 사회적 요소, 즉 사회권은 복지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권이 경제적 사회적 보장의 권리로 강조하고 있으며, 서유럽에서 발전된 것처럼 현대 복지국가에서 그 존재형태를 확보했다<sup>9)</sup>(Steenbergen, B. V., 1996: 2)는 점과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김형식, 1995: 85)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미쉬라는 공민권과 정치권은 '계임의 규칙을 세우는' 반면, 사회권은 '사회적 산물의 분배'와 관련된다고 말한다(Mishra, R., 1981: 32-33). 사회권은 공민권과 같은 자유권이 아니고 정치권과 같은 권력도 아닌 청구권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사회권은 좀더 세부적으로 가능 및 방지권(건강서비스, 가족수당, 개인 및 가족상담, 신체재활), 기회권(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특수집단에 대한 교육부조), 분배권(노령연금, 공공부조, 실업수당), 보상권(산재보험, 상이연금, 권리침해보상) 등으로 구성된다(Janoski, T., 1998: 31).

그리고 참여권 또한 적극적 의미에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복지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여권은 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와 연결되고 있으며, 국가영역이 아닌 시장영역의 권리이다. 따라서 사회권과 마찬가지로 참여권은 공민권, 정치권과는 그 속성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권이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청구권인데 비해 참여권은 일종의 집합적인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권과 더불어 20세기 이후 산업발전 및 산업의 민주화 과정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참여권은 노동시장 개입권(노동시장 정보프로그램, 구직 프로그램, 직업창출 서비스), 기업 및 관료제권

9) 마샬은 사회권의 확대를 주로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인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보았다(Pinker, R., 1998: 93).

(직업안정권, 노동자협의 또는 피해 절차권, 클라이언트 참여 또는 자율행정권, 단체교섭권), 자본 통제권(노동자 경영참여권, 임금노동자와 조합의 투자기금, 자본회피법, 반트러스트법, 지역투자와 균등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Janoski, T., 1998: 31).

사회권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은 곧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회권은 시민권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식화된 기회의 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미 차별화된 조건 속에서 '기회의 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의 확장을 위해서는 참여권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위에 따른 수동적 권리로서는 복지의 목적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 5. 종합 및 결론

이상에서 욕구와 권리의 개념, 그리고 인권 논의와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개념과 영역을 살펴보았다. 복지권이란 복지에 대한 권리로서 시민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지를 수급할 권리이며, 사회 및 국가는 그에 대한 의무를 진다. 복지권은 인간의 생존적 욕구 및 보편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또는 인간다운 삶에 결부된 권리로서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복지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며 적극적 권리이다. 또한 복지권은 일반적으로 사회권으로서 수동적 권리이지만, 능동적 권리인 집합적인 참여권을 포함한다.

인권 논의에서 인권 개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부여받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간의 권리 개념에 입각해 있다. 반면 시민권 논의에서 시민권 개념은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 단위에서 시민의 지위에 부여되는 권리의 의미이다. 따라서 시민권을 인권으로 환연한다면 전지구적 또는 전 인류의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권 개념은 인간이라면 자연적으로 부여 받는 따라서 보편적 원리의 성격이라는 관념에 입각해 있는 반면, 시민권 개념은 마샬이 표현하듯이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이 그 개념상의 기본 원리와 성격은 서로 상이하지만, 복지권을 의미하는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인권 논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권 논의에서 사회적 권리가 그것이다. 인권 논의에서는 UN의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통해 뚜렷하게 그 항목들이 명시되고 있다. 시민권 논의에서는 마샬의 사회권에 대한 언급에서는 교육제도와 사회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표현할 뿐 복지권의 세부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지만, 재노스키 등 후속의 시민권 논의에서 세부 항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복지권의 구성내용

복지권 범주	권리 구성내용	세부 구성내용
(1)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권	각종 소득보장 및 권리침해보상, 상이연금, 사회보험(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가족수당 포함)
	사회복지서비스권	개인 및 가족상담, 가정보호(가정 및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보호
	건강권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신체재활
	교육권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교육부조, 교육기회 평등
	주거권	주택보장
(2) 경제적 권리	노동권	노동, 노동조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동자협의, 단체교섭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노동시장 정보, 구직, 직업창출
(3) 문화·환경적 권리	자본통제권	자본통제권 : 노동자 경영 참여, 자율경영
	문화권	문화권
	환경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깨끗하고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이상의 내용으로 복지권의 성격을 규명해 보자.

첫째,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혹은 국민,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자연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권을 통한 복지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성원성, 즉 시민권이 완성된다. 그러나 복지권은 역사상 자유권 혹은 공민권이나 정치권 등 다른 권리에 비해 뒤늦게 발달했으며, 또한 인권 논의나 시민권 논의에서 권리로서의 중요성이 등 한시되어 왔다. 인간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인권과 시민권의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유권 또는 공민권, 특히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sup>10)</sup>

둘째, 따라서 복지권은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다른 권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쿠트(Coote, A., 1992: 8)는 공민권이 없다면 사회권은 거의 시행이 불가하고 의미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구성 요소 중 공민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10) 예컨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인권문제를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수 문제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1999: 42).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플랜트(Plant, R., 1992: 17-21)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공민권과 정치권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freedom)와 면책(immunities)은 전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의 자유(Liberty)와 능력은 결코 범주적으로 다르지 않다. 예컨대 주택을 소유하는 자유는 주택에 대한 저당대출금(mortgage)을 갚을 여유가 없거나 지불할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니다. 또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수행할 자유는 직업 수행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유가 아니다. 결국 자유를 우리에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권에 의한 능력은 공민권과 정치권에 의한 자유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의 구성요소이다(Dean, H., 1996: 218).

셋째, 복지권은 전체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또는 시민권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대 시민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의 발달에 있어서 자유권이 우선시되고 또 자유권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따라 근대의 인권보장체계는 형식적 평등에 그쳤다. 예컨대 여성과 노예는 배제되었으며, 부르주아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전의 개인권 중심의 권리 개념의 중심가치인 자유가 근대적 경제가치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평등으로 점차 중심이 이전되는 추이 속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이봉철, 2001: 31). 물론 이 단초는 프랑스혁명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후 실질적인 평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다.

넷째, 복지권은 사회의 의무에 기초하지만 수급권자 또한 공동체 성원으로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수반된다. 이러한 의무로는 납세, 국방, 교육 등의 의무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권리에서 의무와 마찬가지로 비조건적(unconditional)인 것이다(Dahrendorf, R., 1996: 13). 예컨대 투표권은, 납세가 시민의 지위에 관련된 의무라 할 지라도, 납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복지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저소득자가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지권이 박탈되거나 유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복지권은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경제과정에 대한 기여의 상대적 가치와는 독립적인 사람들의 지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수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등의 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굽여가 '최저수준'(minimum)이 아니라 마샬이 사회권에 대한 정의에서 표현하듯이 '적정수준'(modicum)이어야 함은 분명하다.<sup>11)</sup> 그리고 복지권의 구성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적정수준은 단지 소득 등 경제적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권리에 도달해야 한다. 인권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복지권의 수준은 그 결핍에 의해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평등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11) 파커(Julia Parker)는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주장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시민권이 아니며, 받는 사람에게 굴욕감을 갖게 하는 원조의 형태라고 비판한다(1977, 김형식, 1998: 57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김경동. 2002. “시민사회사상사 개관”, 시민사회포럼·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엮음.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pp. 13-44. 아르케.
- 김정래. 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 김형식. 1995. “T. H. Marshall의 시민적 권리론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6호(1995년 7월).
- 김형식. 1998. “T. H. Marshall의 『시민적 권리』론”, 김형식 편저.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중앙대학교 출판부.
- 박순우. 1995. 『사회복지정책』. 창간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손준규. 199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 유필무. 200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 이론적 재조명”, 열천 임희섭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간행 위원회.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pp. 229-262.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1999.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 차하순. 1982. 『서양사 총론』. 탐구당.
- 현외성 외. 1995.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 Barbalet, J. M. 1988. *Citizenship*.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rker, R. L. 1987. *Social Work Dictionary*. NASW.
- Bradshaw, J. 1972. “The Concept of Social Need”, *New Society 19(March)*, pp. 640-643.
- Dahrendorf, R. 1996. “The Changing Quality of Citizenship”, Bart van Steenbergen(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pp. 10-19. SAGE Publications.
- Dean, Hartley. 1996. *Welfare, Law and Citizenship*. Prentice Hall/Harvester Wheatsheaf.
- Held, D. 1994. Inequalities of power, problems of democracy, Milliband, D.(ed.), *Einventing the Left*. Polity Press, Cambridge.
- Hohfeld, W. 1978.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Ife, J. 2001. 김형식·여지영 옮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 Janoski, T. 1998.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H. and T. Bottomore.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 Maslow, A.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 Mishra, R. 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 Perrin, Guy. 나병균 역. 1999. “인권으로서 사회보호의 권리인정”, 『계간 사회복지』 통권 제142호(1999 가을).
- Pinker, R. 1998. “세대적 관점에서 본 「시민적 권리의 경험」”, 김형식 편저.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중앙대학교 출판부.
- Plant, R. 1992. “Citizenship, rights and welfare”. Coote, A.(ed.). *The Welfare of Citizens: Developing new social rights*. IPPR/Rivers Oram Press, London.
- Rousseau, J.J. 1995. 최현 옮김.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집문당.
- Steenbergen, B.v. 1994.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an Introduction”. Bart van Steenbergen(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pp. 1-9. SAGE Publications.